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아plus 추가금전신탁(채권형) 제()호 약관(구 외환은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수탁자인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신탁거래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거래처"라함)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이익증식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탁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은행과 거래처의 권리와 의무, 기타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신탁관계인) ① 이 약관에서 위탁자란 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 즉 은행을 말합니다.
② 수익자란 원금 및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익자는 원금수익자와 이익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금수익자인 동시에 이익수익자입니다.
④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동의와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위탁자 본인에 한하며 상속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증표나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4조(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 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5조(증서에 의한 거래)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우나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증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신탁거래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미리 신고 하여야 합니다.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가계수표(이하"수표"라 함)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하"기타증권"이라 함)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발행하고 동 기타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후 입금하며 증서는 수령증을 회수하고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수표 및 제2항의 기타증권에 대하여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④ 이 신탁의 입금시 기준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제8조(신탁성립시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3.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수표를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 대지급 요건·보증조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을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는 신탁 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제9조(수표의 부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신탁원장에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수표를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하는 대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다만, 수표 등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수표 등을 입금할 신탁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

제11조(신탁방법) 이 신탁의 신탁방법은 일정 신탁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적립합니다.

제12조(신탁금액) 이 신탁의 최초신탁금액 및 추가수탁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13조(신탁기간 등)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계좌 신규일로부터 1년이상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신탁금을 반환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배당합니다.

제14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15조(이익계산) ①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 정한 이익계산일에 기준가격방식에 의하여 실적배당합니다.

1. 해지일

2. 이익지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계산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익계산일을 차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기준가격의 계산) ①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권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탁금액 / 수탁일의 기준가격) × 1,000

③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신탁재산의 평가는 제17조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제17조(신탁재산의 평가) ①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채권

가.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월간 매월 10일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일의 최종시가

나. 가목에 해당되는 상장채권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다. 비상장채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 및 "다"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채권일 경우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2. 집합투자증권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

3.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기업어음(CP)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

나.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다. "가" 내지 "나"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4. 파생상품

가. 선물거래는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정산가격. 단 평가일 현재 선물정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선물정산가격.

나. 옵션은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 단, 평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기준가격

다. 해외선물거래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호 및 나호를 준용

5. 외화증권

외화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1호의 방법을 준용하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운용자산중 부실자산(발행자의 최종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정관리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자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한 자산, 신용등급이 D등급인 채권등)에 대하여는 부실인식시점에서 미수수익을 "0"원으로 계상합니다.

제18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1.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0%이내로 합니다. 단,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내로 합니다.
2.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위탁증거금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15% 이내에서 운용하되, 관련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헛지목적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운용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편드해지 이전 2개월, 신탁의 대규모 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의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응모·인수·매입을 말합니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수채증권
 4. 사채권
 5.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규정하는 외화증권
- ④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한합니다.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사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보험회사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마. 투자매매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 무보증사채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 다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제3항 제4호의 사채권중 무보증사모사채에 대하여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⑤ 제3항 "사모사채" 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을 말합니다.

⑥ 제1항제1호의 "대출에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로 합니다.

1. 신용대출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3.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가. 은행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출

⑦ 은행은 제6항의 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신용분석을 통하여 신용등급 책정 및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며, 대출금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범위내에서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⑧ 제1항제1호의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당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본시장법상**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어음
 - 가. 상장법인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환매조건부매수(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증권금융회사
 - 마. 종합금융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차.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7.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8. 집합투자증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방법
- ⑨ 제1항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이란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9조(신탁재산 운용의 재위탁) 은행은 제18조의 운용업무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제3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을 위탁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20조(신탁재산운용의 제한) ①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의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법인(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8항 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8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2. 동일한 계열기업군(은행감독규정 제79조에 정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8항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8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 이내
3.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8항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 대출, 제18조제6항제4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4.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5.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다.
② 펀드의 신탁금액이 500억원 미만일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판매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동일한 법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억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6%**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 중 매일 미지급신탁보수로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은행의 회계결산일
2. 펀드해지일

제22조(조세 및 비용) ①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23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 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24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신탁금의 지급) ① 이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해지신탁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제 9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때의 기준가격은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③ 이 신탁은 거래처가 자유롭게 신탁평가금액에서 거래처가 불입한 신탁원본을 차감한 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이익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항 내지 제 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미리 지정하는 일정 주기마다 이익금의 지급을 받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지정한 날의 매 주기가 경과하는 응답일(응답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로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해당일에 이은 첫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신탁은 신규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해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이익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일부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⑥ 이 신탁의 신탁금을 일부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건별로 수탁금액의 비율에 따라 균분하여 지급하며 일부해지 후 신탁잔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전액을 해지신청 하여야 합니다.

⑦ 이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이익 범위(이미 지급한 신탁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여 이 신탁재산에 편입 합니다.

1.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미만 : 신탁이익의 70%

2.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 신탁이익의 50%

3. 신규가입일로부터 6개월이상 1년 미만 : 신탁이익의 30%

⑧ 제 7항에도 불구하고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이익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⑨ 이 신탁의 원리금은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원리금을 자동이체하고,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예금 또는 신탁에 입금에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두었다가 거래처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법적인 지급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탁의 해지)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때에는 은행은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고,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29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0조(증서의 재발급) 제29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31조(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32조(비밀보장) 은행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4조(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29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6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29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37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은행, 거래처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9조(공시)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상품 안내장 등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기준가격을 창구공시 및 전자공시의 방법으로 매일 공시합니다.

③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매분기별로** 거래처(다만,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래처는 제외)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거래처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합니다.

부칙 (제정)

(시행일) 이 약관은 2002. 3.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01. 01.부터 시행합니다.

2017.01.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610호